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며, 다만, 노사 당사자간 특약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전 기간을 임용기간으로 정하면서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을 2002. 3. 2 부터 2003. 2. 28까지 정하여 동 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해당되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나, 2003. 3. 2 부터 재입용 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그 전후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877-7582)

연봉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한 경우 계약종료 시기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임금결정만 연봉제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수리하지 아니하더라도 1일급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해지됨.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임금결정도 근로계약에 따라 연봉제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준수해야 함. 다만, 민법 제661조에서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만일,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기간제 교사에 대해 방학기간은 임금을 지급치 아니한다는 조항을 방학기간을 계속 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4에서 규정한 계속 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며, 다만, 노사 당사자간 특약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전·기·상·식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대표이사 안병호



로의 지상고가 미달케 되는 경우의 이설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배전로가 건조물의 신·증축에 지장되어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요청하여 이설하는 경우의 이설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합니다. 다만, 미관상의 이유 등을 이설요청하는 경우는 이설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속 이설 요구시에는 고객부담으로 이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 토지내에서 시행하는 건조물 신·증축에 수반하는 축대담장공사 등은 건조물 설치의 부대공사이므로 이로 인해 필요하게 된 조치(지상고 유지 전선로 이설)에 요하는 비용은 한전에서 부담합니다.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031-541-9111)

지장전주 이설신청 방법 지장이 되는 전주의 이설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신·증축 등으로 배전선로(전주, 전선)가 지장이 되어 이설할 경우 고객이 직접 관할 한전(종합봉사실 또는 영업과)에 내방하여 신청하거나 전화 또는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건물 신·증축으로 이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설 신청시 미비된 관련서류는 한전 직원이 현장 조사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건조물 신·증축의 경우 사유지내를 통과한 전선로가 건조물 신·증축에는 직접 지장이 되지 않으나 건조물 신·증축을 위한 대지의 지형변경(축대건조)으로 인해 전선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신경외과장 배준석



골다공증의 진단은 골밀도 측정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골밀도란 뼈의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 수록 뼈가 단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골밀도의 평가는 신체의 대표적인 2부위인 척추와 대퇴골을 촬영하여야 가능하고 이것은 방사선의 피해도 거의 없이 안전하고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검사 방법으로 65세 이상의 여성, 70세 이상의 남성은 보통 일년에 한번 정도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의 위험군에 속한 사람은 고연령, 마른 사람, 골밀도가 낮은 사람, 폐경 여성 및 갱년기 여성, 자궁 및 난소 제거 수술은 받은 사람,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 잘넘어지는 사람, 과다한 음주와 흡연, 카페인의 섭취가 많은 사람, 음식을 짜게 먹는 사람, 칼슘의 섭취가 부족한 사람,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 만성 질환자, 갑상선 이상 또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복용중인 사람, 가족중 병력이 있는 사람이 이에 속합니다.

☞포천병원(031-539-9114)

골다공증과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①

골다공증이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뼈가 얇아지고 약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골소실 과정은 30대 중후반부터 점진적으로 시작되며, 매우 느리기 때문에 본인에게 알게 되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여성은 폐경에 따라 에스트로젠 생산력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골격으로부터 골질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골소실은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

니다. 50대 이후 갑작스럽게 골절이 되어 매우 고통스러워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볍게 넘어졌는데도 손목이나 골반이 골절되는 경우가 있고, 척추골이 약해져 기침이나 물건을 들어올리는 간단한 일상생활에서의 운동에 의해서도 부러지는 척추골절도 흔합니다. 골다공증성 골절, 특히 골반과 척추의 골절은 통증이 매우 심하고 종종 신체장애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생활 습관, 유전, 또는 특정한 의학적 인자들이 골다공증 위험성을 더 높일 수 있지만, 폐경 이후에는 거의 모든 여성에게서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골다공증은 질병에 대한 이해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노름빚 담보조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효력

저는 며칠 전 부친상을 당한 친구에게 문상을 갔다가 옆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회투판에 끼어 들어 제법 많은 돈을 잃게 되었으며, 그 돈을 되찾기 위하여 같이 도박을 하던甲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돈을 빌려 계속하였으나 그 돈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돈을 당장 갚지 못하면 저의 유일한 재산인 조그마한 집과 대지에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해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저의 잘못된 줄은 알지만 이러한 경우에 저의 유일한 재산을 잃게 되는지요?

도박으로 돈을 잃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로 한 계약 등은 민법 제103조에 의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고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는 무효로서 법

적 책임이 없다 할 것이며, 도박자금을 빌려준 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노름빚을 원인으로 써준 것이므로 변제할 수 없다고 항변하여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인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인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름빚을 진 사람이 값을 의사로 이미 지급하였다면 그 후 다시 그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노름빚을 진 사람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미 값을 이상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일에 법이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관례는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취지이므로,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이익에는 사실상의 이익도 포함된다. 그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중구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중구적인 것에 불과하여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享受)하려던 경매신청을 하는 것과 같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박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이라면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근저당권자가 받은 이익은 소구적인 것과 같은 중구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이익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 1995. 8. 11. 선고 94다54108 판결). 따라서 귀하는 甲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도박은 민사와는 별개로 형사범죄로도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추후로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노인 성문제의 대두

우리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의 성문제에 대한 유형과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의식주를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상황에서 인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노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노인의 성생활은 노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어 성적 표현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로 부각되어 노년기의 성은 시대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년복지학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 중의 하나는 노년기의 성에 관한 것이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건강하고 활동적인 '젊은 노인'들이 증가되었으며, 인구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의 성에 대한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노령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노인의 성문제는 폐쇄적인 전통적 관념에서 은폐되어지고 왜곡되어 왔으며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하여 논의문제로 취급되어져 왔다.

최근 들어 노년기의 성문제는 매춘과 더불어 성 전파성 질환이라는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노인의 성에 대한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어지고 있으며, 포스트비노기과 김영한 원장에 따르면 성병에 걸린 노인이 의외로 많고, 더욱 큰 문제는 이를 부끄러워서 감추는 경우가 많아 실제 감염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즈나 매독과 같이 전염성이 있는 성병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를 가정에 알리지 않아 문제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노인의 성'에서 발췌한 내용임.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채화 등의 매입 시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보하세요

건재채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거래처로부터 공구 등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저의 거래처가 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추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제가 확보한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거래처에서 작성한 거래장 노트 사본뿐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공제되는 것이며, 매입을 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이 크거나 자료상행위에 협조하는 등 고의적이고 중대한 경우에는 검찰청에 고발조치를 당

할 수 있으니 절대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비록 자료상과의 거래일지라도 정상적인 매입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선의의 피해자로 보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실물거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임을 각 증빙서류에 의거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와 대금결제사항 그리고 구입한 물건에 대한 매입·매출내역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고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대금결제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수증이나 지급어음 사본 등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거래에 있어서 대금결제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생활화하시고, 불법거래를 감시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조세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서는 성실한 기업인이 되도록 합시다.

☞세무사 박 운 중 031-872-6116

Advertisement for Anam Flower (아남 플라워) featuring a large 'OPEN' graphic, the company name, website URL (http://www.anamflower.co.kr), and a list of services including birthday gifts, business gifts, and wedding gifts, accompanied by images of various flowers.